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항공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초경량 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및 항공안전활동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566호, 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등의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항공사 소속 조종사에 대한 주류등 측정·단속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외국항공사 소속 조종사에 대한 주류등 섭취 및 사용여부 단속 근거가 항공안전법에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 단속업무 권한이 지방항공청에 위임되지 않아,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44호의2)
- 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및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안 제26조제6항제12호, 제13호)
- 다. 공항 주변 불법드론 출현에 따른 항공기 회항 등 승인받지 않은 드

론비행 증가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이
항공안전법에서 상향됨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및 조종자준수사항 미준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안
별표 5)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4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6호를 삭제한다.

44의2.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제26조제6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13.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 또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신청	법 제166조 제4항제1호	100	150	200

을 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등록기호표를 부착하지 않고 항공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166조 제4항제2호	100	150	200
다.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기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66조 제4항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3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66조 제5항제1호	50	75	100
마.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승무원 및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166조 제1항제1호	250	375	500
바. 법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166조 제1항제2호	250	375	500
사.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외의 자만 해당한다)	법 제166조 제1항제3호			
1) 제작 또는 운항 등을 시작하기 전 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250	375	500
2)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250	375	500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250	375	500
4)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50	375	500
아. 법 제59조제1항(법 제10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66조 제5항제2호	50	75	100
자. 항공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61조제1항의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법 제166조 제4항제4호	100	150	200
차.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166조 제1항제4호	250	375	500
카.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법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 훈련을 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66조 제1항제5호	250	375	500
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위험물취급을 한 경우	법 제166조 제1항제6호			
1) 위험물을 일반화물로 신고하는 경우		250	375	500
2) 운송서류에 표기한 위험물과 다른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경우		250	375	500
3) 유엔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포장용		250	375	500

기를 사용하였거나 위험물 포장지 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4) 휴대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 또는 수량기준을 위반한 경우		250	375	500
5) 위험물 운송서류상의 표기가 오기 되었거나 서명이 누락된 경우		250	375	500
6) 위험물 라벨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위험물 분류와 다른 라벨을 부착한 경우		250	375	500
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포장 및 용기를 판매한 경우	법 제166조 제1항제7호	250	375	500
하.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 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고 위 험물취급을 한 경우	법 제166조 제1항제8호	250	375	500
거. 법 제84조제2항(법 제121조제5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반하여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66조 제4항제5호	100	150	200
너. 법 제93조제7항 후단(법 제96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66조 제4항제6호	100	150	200
더. 법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여된 안전성인증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를 준수하지 않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 여 비행한 경우	법 제166조 제4항제7호	100	150	200
러. 법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	법 제166조 제3항제1호	150	225	300

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지 않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며. 법 제1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고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을 한 경우	법 제166조 제1항제9호	250	375	500
버. 법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법 제166조 제3항제2호	150	225	300
서. 경량항공기 조종사 또는 그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법 제1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66조 제6항제1호	25	37.5	50
어.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경량항공기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6조 제6항제2호	25	37.5	50
저.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등록기호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6조 제5항제3호	50	75	100
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법 제1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166조 제5항제4호	50	75	100
커.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법 제123	법 제166조	15	22.5	30

조제4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7항제1호			
터. 법 제124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법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66조 제1항제10호	250	375	500
퍼. 법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법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66조 제2항	200	300	400
허. 법 제1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린 경우 3) 1) 및 2)의 행위를 알선한 경우	법 제166조 제3항제4호	150	225	300
고. 법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경우(법 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66조 제3항제5호	150	225	300
노. 법 제128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	법 제166조	50	75	100

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경우	제5항제5호			
도. 법 제1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경우	법 제166조 제3항제6호	150	225	300
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법 제1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66조 제7항제2호	15	22.5	30
모. 법 제1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경우	법 제166조 제3항제7호	150	225	300
보.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	법 제166조 제1항제11호	250	375	500
소.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법 제166조 제1항제12호	250	375	500
오. 법 제132조제8항에 따른 운항정지, 운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66조 제1항제13호	250	375	500
조. 법 제132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66조 제1항제14호	250	375	500
초.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166조 제1항제15호	250	375	500

부 칙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6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 제13호 및 별표5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 ----- ----- -----.
1. ~ 44. (생략)	1. ~ 4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4의2.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u> <u>준용되는 법 제57조제3항 및</u> <u>제4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u> <u>및 사용 여부의 추정</u>
45. ~ 55의2. (생략)	45. ~ 55의2. (현행과 같음)
<u>56. 법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u> <u>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u> <u>안전개선명령</u>	<u><삭 제></u>
57. ~ 60. (생략)	57. ~ 6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제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⑥ ----- -----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신 설></u> ⑦ ~ ⑩ (생 략)	<u>12. 법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u> <u>13.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u> ⑦ ~ ⑩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255